

제 16 기 임시주주총회 참고서류

※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및 경영참고사항 등 상세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참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1-1호 사업목적 개정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p>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품(동물 대상 포함) 관련 다음 각 목의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획득·이전 나. 임상시험 다. 제조, 수입 판매 등 유통 2. 의·생명과학 및 환자치료사업 영위업체 등에 대한 유가증권 등의 투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사업 3.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 관련 사업 4. 부동산 임대업, 관리업 5. 위 각 호와 관련된 연구, 대행, 자문 등 기타일체의 사업 	<p>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품(동물 대상 포함) 관련 다음 각 목의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획득·이전 나. 임상시험 다. 제조, 수입 판매 등 유통 2. 의·생명과학 및 환자치료사업 영위업체 등에 대한 유가증권 등의 투자 또는 공동사업 운영사업 3.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 관련 사업 4. 부동산 임대업, 관리업 5.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 및 판매업 6. 의료용구, 위생용품, 의료용품, 의료용기기, 세정제 제조업 및 판매업 7. 생명과학(의료기기) 기구 및 재료 제조업, 도,소매업 8. 화장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9.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도,소매 및 무역업 10.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 도,소매 및 무역업 11. 유통 및 도소매업 12.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13. 업종별 홍보 및 마케팅업 14. 위 각 호와 관련된 연구, 대행, 자문 등 기타일체의 사업

□ 제1-2호 대표이사 등의 선임 규정 개정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p>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p> <p>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p> <p>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삭제></p>

□ 제1-3호 상담역 및 고문 규정 개정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p>제39조(상담역 및 고문)</p> <p>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p>	<p>제39조(상담역 및 고문)</p> <p><삭제></p>

□ 제1-4호 감사 선임 관련 규정 개정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p>제40조(감사의 수와 선임)</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제40조(감사의 수와 선임)</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④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건

□ 제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상근)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박상근	'76.02.23	중앙대학교 약학과 학사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M.B.A	없음	신규 선임
	이사회	現) 엠투엔바이오 대표이사 前) J&J, 약텔리온 파마수티컬즈 코리아 대표이사 前) J&J, 한국얀센 신제품도입, 사업개발 부서장 前) J&J, Centocor US, Dermatology Marketing 前) J&J, Janssen Phillipines, CNS Marketing	특수관계인	

□ 제2-2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김상원)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김상원	'67.03.01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학사 Univ. of Pittsburgh 경영학 M.B.A.	없음	신규 선임
	이사회	前) 신라젠(주) 대표이사 前) (주)엠투엔 대표이사 前) SioFic 대표이사 前) SK플래닛 고문 및 성장추진단 단장 前) SK텔레콤 사업개발본부 본부장	없음	

□ 제2-3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김재경)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김재경	'64.10.0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없음	신규 선임
	이사회	現) 선릉김정신과의원 원장 現)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前)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前) ㈜랩지노믹스 대표이사	없음	

제3호 의안 :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 (성만석)

(1) 비상근 감사 후보자 성만석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성만석	'69.09.07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없음	신규 선임
	이사회	現) 엘리오앤컴퍼니 전무이사 前)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前) 벨기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단 감사 前) 공기업경영평가단 상임감사 평가위원 前)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추진단 자문위원 前)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前) 한국병원경영학회 이사	없음	

(2) 후보자의 최대주주와의 관계·회사와의 거래관계·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 4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성명	직위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장동택	대표이사	보통주	350,000
김상원	기타비상무이사	보통주	350,000
OOO	당사 임직원	보통주	21,000
OOO	당사 임직원	보통주	17,000
OOO	당사 임직원	보통주	10,000
총 5 명	-	-	총 748,000 주

※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 만분의 10 미만으로 부여받은 자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748,000 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p>1. 행사가격: 6,000 원</p> <p>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산정은 상법 제 340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해야 하지만 당사는 2020 년 5 월 8 일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음.</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7의 제3항 2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니아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 바이러스 면역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항암제 신약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가 속한 바이오 신약개발산업은 개발 중인 신약의 글로벌 판매가 성공할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개발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신약의 개발시작부터 시판승인에 이르기까지 10~15 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그 중에서도 항암제 신약분야는 다른 질환치료제 대비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확률은 낮은 고위험 산업이며, 이런 회사의 특성상 자산가치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현저히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임.</p> <p>'대법원 2006. 11. 24. 자 2004 마 1022' 결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 현재</p>	-

구 분	내 용	비 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액을 실질가액기준으로 산정하되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였음. 2. 행사기간: 2023.10.30~2030.10.29	
기타 조건의 개요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102,867,125	발행주식 총수의 15%	기명식 보통주	15,430,069	2,169,223

- 최근 2 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16 년	2016.03.23	62 명	보통주	2,890,000	2,045,777	372,000	472,223
2017 년	2017.03.03	1 명	보통주	200,000	-	-	200,000
2018 년	2018.02.23	43 명	보통주	500,000	-	377,000	123,000
2018 년	2018.03.23	2 명	보통주	50,000	-	-	50,000
2019 년	2019.03.04	30 명	보통주	290,000	-	235,000	55,000
2021 년	2021.07.23	40 명	보통주	1,286,000	-	17,000	1,269,000
계		총 178 명		총 5,216,000 주	2,045,777	총 1,001,000 주	총 2,169,223 주